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14 선고 2023가단11520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경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은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1. 1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피고와 C은 2019. 10.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B 교수님을 '갑', C 사장님을 '을'로 명칭하겠습니다.
2. D정신병원의 투자를 위해 을은 병원에 4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3. 을이 투자원금을 손해를 볼 경우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의 4억 투자 원금의 회수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2020년 4월 30.일 1억원
- (2) 2022년 1월 31.일 1억원
- (3) 2023년 1월 31.일 1억원
- (4) 2024년 1월 31.일 1억원

5. 을의 투자금 이자는 월 1.5부로 해서 이자 지급을 합니다.

이자에 대한 첫 납기일은 2019년 12월 5.일부터 하며 매월 5일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을의 급여는 한달에 6백만원을 책정해서 매달 병원 월급날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날짜는 병원이 오픈하는 익익월로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병원의 매출이 잘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월급을 1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7. 병원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한 부분은 갑과 을의 상의 하에 처리하며 병원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8. 을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될 경우 이 약정의 권리는 모두 을의 아들인 A에게 위임을 합니다.

9. 갑은 을에게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병원에 대한 갑의 보증금 1억5천에 대해 양도합니다.

10. 이 계약기간은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② 의료법인 E(이하 'E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9. 10. 25.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1조 채무자는 2019년 10월 25.일 채권자에 대하여 2019년 10월 24.일자 투자원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금 400,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며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위 금 400,000,000원을 2020년 4월 30.일에 금 100,000,000원을, 2022년 1월 31.일에 금 100,000,000원을, 2023년 1월 31.일에 금 100,000,000원을, 2024년 1월 31.일에 금 100,000,000원을 각 변제한다.

제3조(이자) 연 18%의 비율로 2019년 12월부터 매월 5일에 각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

③ C은 2020. 5. 1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F, 자녀인 G,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F, G, 원고는 2020. 10.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정신병원의 실운영자인데, 망 C에게 병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망 C과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망 C에 대하여 E의료재단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망 C이 E의료재단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망 C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 C의 채권을 단독으로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비의료인인 망 C이 병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는 E의료재단의 단순 채권자로서 E의료재단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망 C과 E의료재단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 제3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문언은 망 C이 E의료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각종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E의료재단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을 통한 채무부담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통하여 망 C에 대하여 E의료재단과 연대하여 투자금 4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에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라는 문언이 사용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가 D정신병원의 실운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③ E의료재단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한 다음 날인 2019. 10. 25. 피고와는 별개로 망 C에게 "2019년 10월 24.일자 투자원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른 것임을 명시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약정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의사가 아닌 피고와 의사가 아닌 망 C이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D정신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그 운영 및 손익 등이 피고 및 망 C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① 피고와 망 C은 이 사건 약정 제7조를 통하여 병원의 매출과 매입, 이익을 상의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약정 제8조를 통하여 망 C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망 C의 아들인 원고가 망 C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망 C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망 C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 외에도, 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임에도 병원이 개설되는 익월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병원의 매출이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이는 망 C이 급여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병원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③ 피고와 망 C은 이 사건 약정 제10조를 통하여 계약기간이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명시하였다. 망 C이 단순 금전채권자였다면 계약기간을 투자금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 계약기간을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로 정한 것(즉 병원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병원의 매출 등을 협의하여 투명하게 처리하고,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피고와 망 C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성율